

NEWSLETTER 926

Jan 23, 202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할당관세란 물자수급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이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에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공고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대파, 바나나 및 망고 등의 물품에 대해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

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II.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 대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바나나 및 망고 등 24개 물품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의 적용 내용을 담은 별표 5 및 별표 6을 신설.

2. 할당관세 적용기간 및 세율

품명	할당관세율	적용개시일	적용만료일
대파[별표 5]	0%	2024.01.19	2024.03.31
바나나, 망고 등 24개[별표 6]	품목별 상이	2024.01.19	2024.06.30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붙임2] [별표 5] 2024년 1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붙임3] [별표 6] 2024년 1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Contact



황혜준 관세사

T 070-4353-1597
E hjhwang2@esein.co.kr



이재훈 관세사

T 070-4353-1553
E jhlee2@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